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58
-----------	-----

2011. 06. 28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6. 10.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1. 6. 17
-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2011.6.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택본부장 김효수)

가.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 재정비축진특별회계」는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달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정비축진사업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므로 「재정비축진특별회계」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정비축진사업계정과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 및 재정비축진사업의 용자조건 등을 신설함(안 제2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제3항, 제7조의2)
-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축진을 위한 조례」중 재정비축진특별회계 관련 조항인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재정비 축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과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1. 5. 31. ~ 6. 7.)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대상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종식)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 재정비축진특별회계」는 설치 근거 법령이 달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 2010. 9. 27. 조직개편으로 재정비축진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비축진 특별회계」를 주택본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기존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 6.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1. 6. 17.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재정비축진사업계정과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 재정비축진사업의 보조 및 용자의 범위, 용자조건을 신설(안 제2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제3항, 제7조의2)하고,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축진을 위한 조례」중 재정비축진특별회계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안 부칙 제2조)하는 것임.

주요 사안에 대한의견

- 현재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구분·관리되고 있음.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재정비축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축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재정비 축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추진계획」(서울시장 방침 제67호, 2011.5.27)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의 통·폐합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통합하더라도 별도 계정으로 운영 관리됨에 따라 사실상 운영에 차이가 없고, 회계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추진계획(안)」

○ 목적

-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설치 목적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폐합하고 강행규정 및 원가개념의 회계기금은 존치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함.
- IMF('01), OECD('03) 한국경제보고서 — 특별회계·기금 대폭 정비 재정구조 단순화 권고

○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안)

- 12개 회계(16계정) 13개 기금(19계정) → 7개 회계(9계정) 12개 기금(18계정)

현 행	폐지(일반회계 전환)	유사회계(기금) 통합	현행유지	통·폐합 결과
12개 회계 (16계정)	4개 회계(7계정)	2개 회계(3계정) → 1개 회계(3계정)	6개 회계 (6계정)	7개 회계 (9계정)
13개 기금 (19계정)	1개 기금(1계정)	-	12개 기금 (18계정)	12개 기금 (18계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입으로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
 - 나.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융자

10.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용자.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상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 동산이전비의 용자
12. 과거 흔적 조성사업(주민의 삶의 모습·추억·애환이 담긴 거리나 동네의 흔적을 기록하거나 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용의 보조
13. 지역특화사업(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비용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15.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16.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
17.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보조 및 용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 나.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 다.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 라. 제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 마.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바. 제5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과거 흔적 조성사업 비용
 - 사. 제5조의2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 아. 제5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의 비용
 - 자. 제5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2.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

② 특별법 영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다.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가.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용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의 범위 이내

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

라. 제5조의2제2항제11호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마. 제5조의2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사. 제5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

아. 제5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용자조건 및 상환기준 등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9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3. 용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사업방식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용자는 시장과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 ②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앞의 “제6장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을 설치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설치·운영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2011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u>도시환경정비사업</u>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계정의 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p> <p>①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6. (생략)</p> <p>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u>시</u>에 귀속</p>	<p>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p> <p>제1조(목적) ----- ----- ----- ----- <u>도</u> <u>시환경정비사업</u>, 「도시재정비 <u>추진</u>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u>추진사업</u>----- ----- ----- -----</p> <p>제2조(계정의 구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추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u>별도의 계좌</u>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p> <p>① ----- -----</p> <p>1.~6. (현행과 같음)</p> <p>7. ----- ----- <u>서울특별시</u>(이하 “시”라</p>

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8.~9. (생략)

② (생략)

〈신설〉

한다)-----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입으로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

나.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용자

10.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용자.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7조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 휴업손실보상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상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 동산이전비의 용자

12. 과거 흔적 조성사업(주민의 삶의 모습·추억·애환이 담긴 거리나 동네의 흔적을 기록하거나 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용의 보조

13. 지역특화사업(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비용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15.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16.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

17.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신 설〉

제5조의3(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보조 및 용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마.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과거 흔적 조성사업 비용

사. 제5조의2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아. 제5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의 비용

자. 제5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2.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

담계획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

② 특별법 영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다.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7조(용자조건 등)
① ~ ② (생략)

〈신 설〉

사업비

가.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
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용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행령」 제60조제4항의 범위 이내

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건축공사
비의 40퍼센트 이내

라. 제5조의2제2항제11호에 따
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마. 제5조의2제2항제14호에 따
른 안전진단 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5호에 따
른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사. 제5조의2제2항제16호에 따
른 설계비 등 용역비

아. 제5조의2제2항제17호에 따
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제7조(용자조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용자조
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용자조건 및 상환기준 등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9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3. 용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사업방식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용자는 시장과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2(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
례」에 따른다.